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합559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피고D

변론 종결2015. 11. 26.

판결 선고2016. 1.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의 7736분의 5231.4 지분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원고 C에게 3/9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B, 소외 E, F, G, H에게 각 1/9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76. 9. 12. 사망하여 그의 처인 E, 자녀들인 원고들, F, G, H(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남양주시 J 임야 7,736m²(이하 '분할전 J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1. 12. 31.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전 J 임야에 관하여 1978. 9. 2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0. 6. 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고, 1984. 8. 21.경 1984.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분할전 J 임야 중 7736분의 5231.4 지분에 관하여 1984. 10. 10.경 1984.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분할전 J 임야는 2012. 11. 29.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5)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L 대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L 대지에 관하여 1980. 6. 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1980. 5.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치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위 토지의 관리를 맡겨 두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을 위임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분할전 J 임야에 관하여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다시 그 중 7736분의 523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L 대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분할 전 J 임야에 관하여 1984. 8. 21.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 A, B의 최초 인감신고일은 각 1991. 12. 30. 및 1996. 10. 25.이다. 따라서 위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의 등기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한 원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참조),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참조).

앞서 본 전제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1984. 8. 21. 분할전 J 임야를 K에게 매도하고, 1980. 6. 5. L 대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A, B은, 최초 인감신고일에 대하여 분할전 J 임야에 관하여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1991. 12. 30., 1996. 10. 25.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남양주시 오포읍장, 서울 성북구 보문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최초신고일이라고 주장하는 위 각 날짜는 인감대장을 주민등록표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함에 따라 인감대장 도입 후 인감을 재신고한 날짜를 의미하고,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원고 A의 인감신고일은 1981. 11. 25., 원고 B의 인감신고일은 1984. 7. 20.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정수

판사장영채

판사김동희

별지